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과정과 한일관계*

정 병 욱**

머리말

- I. 아메리카의 대일점령정책과 조선은행 일본지점 폐쇄
- II. 일본정부의 「폐쇄기관령」 개정과 제2회사 설립
- III. 한국정부의 청구와 '한국법인' 주장
 - 1. 조선은행·조선은행청산위원회의 조사
 - 2. 뉴욕지점 재산 추심과 6차 한일회담의 논리 전환
 - 3. 문제의 종착점과 식민지적 기원

맺음말

요약

1945년 9월말 연합군총사령부는 전쟁협력을 이유로 조선은행 일본지점을 폐쇄시켰다. 본 연구는 당시 조선은행 일본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행방, 이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과 내외 갈등을 분석하여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와 국내정치, 아메리카 점령정책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글이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A00057)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투고일: 2009.08.31.

심사일: 2009.09.01.

심사완료일: 2009.09.14.

아메리카의 조선은행에 대한 ‘속지주의’적 폐쇄·청산(일본 영토에 있는 재산은 일본 것, 한국 영토에 있는 것은 한국 것)과 점령정책의 전환(비군사화에서 경제부흥으로)은 한일 간 분쟁의 근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은행이 발권의 특권이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납부금을 징수한 뒤 제2회사 설립을 허가했다. 대신 청산인은 한국이 청구권을 주장하는 재산이라는 대외적 부담을 정부에 떠넘겼다. 강화조약 이후 일본지점의 청산과 제2회사 설립과정은 패전 이후 일본정부와 식민지 귀환자가 국가와 국민으로서 다시 재회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자신이 부정했던 청산인의 ‘사유재산’론(조선은행은 일반은행으로 주주의 사유재산임)을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조선은행이 본점 소재지와 법 시행지 등의 측면에서 한국 법인임을 주장했다. ‘한국법인’론은 아메리카군정 시기부터 나왔고, 1950년대 말 뉴욕지점의 재산 추심 과정에서 다듬어져, 제6차 한일회담에 등장했다. 식민지와 그로부터 해방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담아내려는 ‘탈식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은행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준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정치적 타결로 ‘한일협정’을 맺은 뒤 국내에서 민간청구권을 신고 받을 때는 과거 일본정부의 논리를 답습했다.

주제어 : 조선은행 일본지점, 폐쇄기관, 청산, 청구권, 한일회담

머리말

1945년 9월말 연합군총사령부가 폐쇄명령을 내렸을 때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자산은 67억여 엔이었다.¹⁾ 그 주인은 일본을 점령한 아메리카일까, 소재지인 일본의 은행 주주들일까, 아니면 한국의 조선은행 본점일까? 1952년 2월 개시된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청구권 8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위의 자산은 그중 제4항목(한국 본점 법인의 재일재산)의 주요 부분이었다. 글의 목적은 이 자산의 행방, 이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과 내외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와 국내정치, 아메리카 점령정책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시기 한일관계 연구는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윤곽과 주요 논점은 이미 밝혀졌다.²⁾ 세부 소재를 통해 그 간의 논점을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글의 소재는 일본사에서 ‘폐쇄기관’ 연구로서 다뤄질 수 있다. 현재 연구는 관련기관이 남긴 자료를 소개하는 초보 단계이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폐쇄기관의 패전 이전 실태가 분석되기 시작했다.³⁾ 폐쇄 이후 실태와 청산과정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국의 시야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글은 조선은행 일본지점(재산)이 폐쇄되고 청산되고 청구되는 시기에

1)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1987,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962-963쪽.
2) 기존 연구에 대해선 오오타 오사무, 2008,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박진희, 2008, 『한일회담-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제과정』, 선인 참조.
3) 村上勝彦, 1997, 「閉鎖機關について-「閉鎖機關とその特殊清算」を中心に」, 『1940年代の東アジア』, アジア經濟研究所; 原郎・山崎志郎 編, 2006 『戰時日本の經濟再編成』, 日本經濟評論社.

따라 1~3장을 배치하고 각각 아메리카, 일본정부, 한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장별로 다루는 시기가 중복되기도 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정부 이외 이해당사자들의 동향과 논의를 조사하여 이 문제가 각각의 국내정치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해결되는지 파악하려 했다. 아울러 각 주체의 과거사 인식 차이가 구체적인 재산 처리과정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주목하였다.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폐쇄부터 제2회사 설립에 이르는 기본적인 내용은 관련기관의 정리 자료나 社史에 나와 있다.⁴⁾ 일본정부의 정책은 주로 법령과 법령 해설 잡지, 일본 관계자의 동향은 주로 회고록과 중앙일한협회의 기관지 『同和』를 통해 파악했다. 한국 정부와 관계자의 대응을 알기 위해 朝鮮銀行清算委員會의 청구권 자료, 공개된 한일회담 회의록, 외교 문서 등을 이용했다.

I. 아메리카⁵⁾의 대일점령정책과 조선은행 일본지점 폐쇄

1945년 9월 30일 동경의 연합군총사령부는 「식민지 및 외국 은행과 特別戰時機關의 폐쇄에 관한 각서」(SCAPIN 74)를 일본정부에 건넸다. 전 시금융금고, 자금통합은행, 조선은행, 대만은행 등 21개 기관과 일본 이외

4) 관련기관의 정리 자료로 대표적인 것이 閉鎖機關整理委員會, 1954, 『閉鎖機關とその特殊清算』;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終戦から講和まで 第1卷 - 總説; 賠償・終戦處理』, 東洋經濟新報社, 1984이다. 社史로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이 있다.

5)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로 '아메리카합중국'으로 번역되나 이하 '아메리카'로 줄여 쓴다.

의 지역에서 “식민지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과 “군수생산부문 금융”을 목적으로 한 기타 은행·개발회사·기관의 일본 내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를 폐쇄하라는 지령이다. 당일 일본정부는 29개 기관의 일본 내 점포를 폐쇄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관련법 「外地銀行, 외국은행 및 특별전시기관의 폐쇄에 관한 省令」(大藏・外務・内務・司法省令 第1号)을 공포했다.⁶⁾ 29개 기관 중에는 조선은행 이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있었다. 이후 1949년 5월까지 총 1091개의 기관이 폐쇄되었다.⁷⁾

폐쇄는 아메리카의 초기 대일점령정책인 ‘非軍事化’, ‘민주화’에 따른 것이었다. 경제의 비군사화를 위해 군수시설 및 군수자재의 처분, 군수산업 재흥 방지, 인적 청산 등과 함께 침략의 경제적 기반이 해체되었는데, 식민지 금융 및 ‘개발’기관과 자금동원기관의 폐쇄도 그 일환이었다. 閉鎖機關整理委員會의 분류에 따르면 1091개 폐쇄기관 중 69개가 비군사화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해체, 독점 금지, 농지 개혁, 노동조합 공인 등과 함께 민간통제기관이 해체·폐쇄되었는데, 폐쇄기관 중 1022개가 이런 통제기관에 해당한다.⁸⁾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폐쇄된 기관은 수가 적지만 시기가 1945, 46년 점령 초기에 집중되었으며,⁹⁾ 연합군총사령부가 중시하였다. 1945년 9월

6) 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18-19쪽. SCAPIN 74의 원제목은 “Memorandum concerning Closing of Colonial and Foreign Banks and Special Wartime Institutions”이다. 한편 朝鮮銀行 下關支店 門司派出所는 10월 중순에야 폐쇄됐다. 일본정부가 GHQ에 제출한 명부에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80쪽).

7) 村上勝彦은 폐쇄기관수를 1093개(번호가 부여된 것 1089 + 부여되지 않은 것 5 - 비폐쇄기관 1)로 파악하나(村上勝彦, 앞의 논문, 335, 348쪽), 폐쇄기관정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일람표를 보면 456번과 553번이 결번이다(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자료편 15-53쪽).

8) 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17-24쪽.

9) 1945년 폐쇄기관수 29개 중 100%, 1946년 55개 중 44%(24개)가 비군사화를 위해

30일 폐쇄 당일 연합군총사령부 경제과학부장 크레이머(Raymond C. Kramer)는 신문기자회견에서 “연합국은 세계사상에서 거의 전례 없는 금융조작의 始終을 명확히 하려” 한다며 그 예로 조선은행, 대만은행을 들었다. “조선은행을 지배했던 금융업자는 거의 軍閥이 했던 것과 같이 일본정부의 팽창정책”을 원조하였다. 조선은행은 “중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술책을 부렸고, 군벌과 밀접한 연계를 취하면서 영업”하였다. 대만은행은 “남방정복에 의한 약탈을 감득”하였다.”¹⁰⁾ 그의 발언으로 볼 때 아메리카는 식민지 금융기관을 일본군국주의의 “침병”으로 예의 주시하였던 것 같다. 1946년부터 실시되는 ‘公職追放’에서도 대상군의 하나로 “일본의 팽창에 관계한 금융기관 등의 간부”가 설정되었다.¹¹⁾ 조선은행의 경우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5년 8월 패배할 때까지 근무했던 은행장(총재), 부은행장(부총재), 이사, 감사, 북경지점장, 상해지점장 등이 추방되었다.¹²⁾

눈여겨 볼 점은 폐쇄 지령이 미치는 지역이 일본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¹³⁾ 식민지 금융기관이나 ‘개발’기관은 업무상 본점이나 점포의 대다

폐쇄된 기관이다(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19-20, 24쪽).

- 10)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80-781쪽(원자료 『朝日新聞』 1945.10.2일자).
- 11) 増田弘, 1998, 『公職追放論』, 岩波書店, 1-3, 38-54쪽.
- 12) 『同和』 35호, 1950.11.1, 追放解除になつた朝鮮關係者 ; 『同和』 45호, 1951.9.1, 第二次追放解除發表.
- 13) 처음에는 일본 당국자들도 혼선을 빚었다. 대만은행 동경 지점은 9월 30일 즉시 타이베이 본점에 일본점포의 폐쇄와 간부의 해임을 알리며 대만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라는 대장성의 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본점의 간부는 발권은행으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離職하는 것은 경제계를 혼란시키는 것”이라며 대만총독부를 통해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장성에 전달하여, 대장성으로부터 그대로 있으라는 회답을 받았다고 한다. 10월 2일 타이베이 본점은 대만의 각 점포에 일본 점포의 폐쇄를 알리며 “대만과는 관계없다”고 타전했다.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대만에 진주한 것은 10월이었고, 이듬해 5월에서야 은행을 접수했다(臺灣銀行史編纂室, 1964, 『臺灣銀行史』, 1119, 1142-1148쪽). 한편 남한의 아메리카 군정청은 일본지점의 폐쇄 이후 10월 3일 “조선은행은 멀지 않아 접수한다. 각 금융기관은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수가 일본 바깥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폐쇄나 접수는 점령군과 현지 사정에 따라 달랐다. 조선은행의 경우 한반도 38도선 이남의 점포는 아메리카군에 의해(45.10), 38도선 이북은 소련군 또는 각지 인민위원회에 의해(45.8~9), 중국 동북지역은 소련군에 의해(45.9~12), 그 외 중국 지역은 장개석의 국민당군에 의해(45.9~46.4) 접수되었다. 일본 지점이 폐쇄된 반면 각 점령지의 점포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였다. 가장 먼저 폐쇄된 38도선 이북의 점포들은 9월 이후 영업이 재개되었다가 1946년 1월 설립된 북조선중앙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아메리카군에 의해 10월 13일 접수 완료된 서울의 본점은 이후 아메리카군정의 중앙은행으로서 38도선 이남의 지점을 관할하였다. 중국의 점포는 중국농민은행 등에 흡수되었다.¹⁴⁾ 점령의 형편과 편의상 은행의 분할 접수는 불가피했겠지만, 하나였던 회사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지배를 받음에 따라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일본과 남한의 조선은행 점포는 같은 아메리카군에 의해 달리 처리되었고, 이후 분쟁의 많은 부분은 이런 ‘속지주의’로부터 파생되었다.

아메리카의 대일점령정책은 1947, 48년 경 바뀌었다. 보통 ‘경제부흥’과 ‘자립화’로 요약되는 전환의 시발점은 배상문제였다. 1947년 1월 스트라이크(Clifford Stewart Strike)를 단장으로 하는 ‘대일배상 특별조사단’은 일본을 방문한 뒤 그 해 2월 1차 보고서에서 ‘납세자의 논리’를 내세워 배상의 완화나 포기를 통한 일본경제의 자립화를 요구했다. 다음 해 3월 2차보고서에는 ‘냉전의 논리’가 가세되었다. 전환은 1948년 10월 「아메리카의 대일정책 권고에 대한 국가안정보장회의 보고」(NSC13/2)로 확정되었다. 이 문서는 공산진영과 대결을 위해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 이를 위해 노동쟁의의 억제, 재정 균형화, 공직추방의 중단,

743쪽).

14)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24-771, 850-853쪽; 정동진, 1992, 북한의 1947년 화폐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7-30쪽.

전범재판의 조기 종결 등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동년 12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 19인의 A급 전범용의자가 석방되었다.¹⁵⁾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취해진 공직추방도 해제되기 시작하여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앞두고 대부분 해제되었다. 조선은행 간부들도 1950년 10월과 다음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제되었다.¹⁶⁾

점령정책의 전환은 폐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폐쇄기관의 정리과정은 크게 ‘보관’ → ‘청산’ → ‘분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⁷⁾ 1946년 2월 閉鎖機關保管人委員會가 설치되었는데, ‘보관’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폐쇄기관에 대한 조사와 재산관리를 담당하였다. 1946년 8월 경부터 연합군총사령부는 동 위원회를 청산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고,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1947년 3월 「閉鎖機關令」(칙령 74호)을 공포하고 동년 5월 閉鎖機關整理委員會를 발족시켜 ‘특수청산’을 추진하였다. 일반 법규에 의거하는 청산과 다르기 때문에 ‘특수청산’이라 하는데, 회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의 배제와 일본 국내분만의 청산이란 점이 일반 청산과 가장 다른 점이었다. 전자는 戰犯에 대한 懲罰을 의미하며, 후자는 앞서 보았던 ‘속지주의’로 연합군총사령부의 실제 관할권이 일본국에 한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산 이후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서 몰수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¹⁸⁾ 마침내 1948년 8월 「閉鎖機關令」이

15) 吉田 裕 編, 2004, 『(日本の時代史 26)戰後改革と逆コース』, 吉川弘文館, 65-66쪽 ; 오오타 오사무, 앞의 책, 53-54쪽.
16) 주 12)의 자료 ; 増田弘, 앞의 책, 11-12쪽.
17) 이하 정리는 주로 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31-132쪽 ; 大藏省財政史室編, 앞의 책, 633-666쪽에 의거한다.
18) 小田久藏, 1952.2, 「閉鎖機關の財産處理の實況」, 『ジュリスト』 3호, 25쪽. “세상에는 폐쇄기관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또는 타 방면으로 몰수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자가 많았다. 따라서 기업재건정비법이나 금융기관재건정비법에 기초해 당 회사, 은행 등이...정비계획서를 작성함에 소유한 특정의 폐쇄기관 주식 또는 출자는 모두 0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정되어(政令 제251호), 잔여재산은 불입된 株金額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 기타의 구성원에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다.(19조 2항) 이는 일반 청산과 유사한 규정으로 점령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50년 12월 개정(정령 368호)에 의해 청산 대상이 ‘그 재산’에서 ‘本邦内に 있는 재산’으로 명확히 한정되었다. 1952년 3월 해산될 당시 폐쇄기관정리위원회는 1085개 폐쇄기관의 자산 85%를 회수했고 채무 69%를 지불했다. 【표 1】 청산을 종료하지 못한 기관은 470개였다.

【표 1】 폐쇄기관정리위원회의 청산실적 추이(단위 : 천엔)

항목		1948.4.25	1949.3.25	1950.03.31	1951.3.31	1952.03.31	
		(359개)	(1047개)	(1086개)	(1085개)	(1085개)	(조선은행)
換價할 자산	폐쇄일 현재a	146,678,567	94,986,584	97,552,686	98,181,633	97,867,541	6,263,272
	해당연월(현재)	133,505,852	37,220,036	24,899,884	18,118,485	14,951,895	5,727,932
환가 제자산	장부가격b (B/A)	13,172,715 (9%)	57,766,548 (61%)	72,652,802 (74%)	80,063,148 (82%)	82,915,646 (85%)	535,340 (9%)
자산환 가격	(매각금, 회수현금)	13,796,527	66,391,426	83,131,598	86,095,881	88,676,808	560,572
지불해야 할 채무	폐쇄일 현재c	143,154,804	102,380,828	111,229,760	111,778,831	125,512,252	377,745
	해당연월현재	131,785,948	40,770,913	35,877,661	29,580,470	38,790,556	15,510
채무지불액 d(d/C)		11,368,856 (8%)	61,609,915 (60%)	75,352,099 (68%)	82,198,361 (74%)	86,721,696 (69%)	362,179 (96%)

자료 : 閉鎖機關整理委員會, 1954, 『閉鎖機關とその特殊清算』, 132-48쪽.

* 연월일 아래 괄호 안 수치는 해당 시기 폐쇄기관정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관수이다.

그런데 조선은행 일본지점은 여타 폐쇄기관과 다르게 처리되었는데, ‘청산’ → ‘유보’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¹⁹⁾ 연합군총사령부는 1945년 10월 일본은행을 조선은행, 대만은행, 조선식산은행 등 폐쇄된 5개 식민지

및 외국은행의 청산인으로 지정하였고, 일본은행은 46년 3월 폐쇄기관처리부를 설치하여 청산에 착수하였다. 왜 보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산을 추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표적인 폐쇄기관을 은행 업무를 잘 아는 청산인에게 맡겨 신속히 청산·해체함으로써 정책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²⁰⁾ 일본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토지·건물을 처분하는 등 한국관계분을 제외한 재산을 청산하였으며, 잔여 업무를 1948년 11월 폐쇄기관청산위원회에 이관하였다.

청산 후 잔여재산 처리도 달랐다. 1950년 12월 26일 폐쇄기관령 개정(정령 368호)에 의해 추가된 제19조 1항에는 “연합국사령관의 요구에 기초해 대장대신이 지정한 외지은행, 외국은행 또는 특별전시기관인 폐쇄기관(재외활동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지정일 이후 사채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같은 날 「特定在外活動機關 등의 引當財産 管理에 관한 政令」(정령 369호)을 공포하여, ‘引當財産’ 중 금전, 국채, 지방채는 일본은행에 맡겨두고 식량증권, 단기국채 구입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引當’이란 지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해 둔다는 의미다. 이틀 뒤 12월 28일 조선은행을 포함하여 58개 기관이 ‘재외활동기관’으로 지정되었다.²¹⁾ 해당지역 국가·국민과 관련된 재산이 많아 강화조약 이후로 그 해결은 미루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많

19) 이하 조선은행의 청산과정은 주로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84-789쪽에 의거한다.

20) 일본은행측은 청산인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 연합군총사령부의 ‘신뢰’를 이유로 들었다(大藏省財政史室編, 앞의 책, 643쪽). 이는 당시 대장성이 제안했던 帝國銀行이 아니라 일본은행이 청산인이 되었던 이유가 될지 몰라도 조선은행이 다른 폐쇄기관과 달리 바로 청산 절차를 밟은 이유는 아니다.

21) 법령 내용은 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자료편 208-209, 238-240쪽 참조.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자산 중 일본은행에 보관되어 여유자금으로 활용된 것은 1952년 3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다. 일본은행예금 3652.2만엔, 식량증권 10억 2815.6만엔, 국채 2억 1956.2만엔, 합계 12억 8424.0만엔(위의 책, 173쪽).

은 부분이 한국과 관련된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표 1】을 보면 1952년 3월 현재 정리한 자산은 9%에 불과했다.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이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처리된 채무의 비중이 96%로 높은 것은 ‘재외지점’ 계정(주로 한국본점계정)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전시협력기관에 대한 폐쇄정책은 전체 점령정책의 전환과 연동하여, 일본의 ‘경제부흥’과 ‘자립화’를 위해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쪽으로 완화되었다.²²⁾ 그러나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조선은행 등 재외활동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의 처분을 유보하고 활용을 제한하며, 그 해결을 강화조약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점령정책의 전환이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재산 처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되었지만, 폐쇄의 바탕이 된 과거사, 특히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에 준 영향은 컸던 것 같다. 아메리카의 정책 전환이 곧 일본의 전쟁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정부나 일본인은 면죄부로 받아들이거나 애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측은 아메리카의 초기 징벌 정책이 틀렸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의 점령정책 전환은 폐쇄 정책의 기본 전제인 과거사 인식을 흔들었으며, 앞서 본 ‘속지주의’ - 분할 점령과 분할 청산 -와 함께 이후 분쟁의 근원이 된다.

22) 이런 관점에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閉鎖機關整理委員會 編, 1951, 『閉鎖機關の現況』, 大藏省管財局이 있다.

II. 일본정부의 「폐쇄기관령」 개정과 제2회사 설립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한 일본정부는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52년 3월 31일 폐쇄기관정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조선은행 등 52개 ‘재외활동기관’의 특수청산인으로 정리위원회 상무위원이었던 이시바시 료우키치(石橋良吉)를 임명하였다. 7 월에는 전 조선은행부은행장(1945.2~9)으로 ‘공직추방’되었다가 1951년 해제된 호시노 키요지(星野喜代治)를 고문으로 위촉하였다.²³⁾ 그는 1952년 4월 중의원 大藏委員會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폐쇄기관령」은 회사와 중역을 죄인 취급하는 굴욕적인 법령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 구 은행관계자에 의해 일반 상법 규정에 따라 조선은행을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²⁴⁾

호시노의 진술 중에는 조선은행을 외국법인, 즉 ‘조선의 은행’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법인임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근거로 일본법에 의해 세워졌고 일본인 주주가 많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 왜 경성(서울)에 본점을 두었는가. 첫째는 영업지역이 넓어 동경에 두는 것이 불편해서였다. 둘째는 조선의 중앙은행이므로 본점을 동경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정적 의견이 조선총독부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23) 同和』45호, 1951.9.1, 「第二次追放解除發表」. 호시노는 대장성 출신으로 1938년 8월 조선은행 이사가 되었고 45년 2월 부총재가 되었다. 줄곧 동경지점에 근무하다 45년 1월부터 경성에 근무하며 패전 전후 은행을 지휘하였다. 패전 직후 호시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병욱, 2003.8, 해방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 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 2003 가을호 참조.

24) 星野喜代治, 1967, 『回想錄』, 日本不動産銀行十年史編纂室, 150-166쪽.

다.²⁵⁾ 진술의 사실 여부를 떠나²⁶⁾ 일본에서 조선은행이 일본법인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의문의 핵심이 본점 소재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지점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이 될 수 있는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였다.²⁷⁾

강화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과정은 호시노가 청산인이 되는 1953년 11월까지와 제2회사가 설립되는 1957년 4월까지로 나뉘볼 수 있다.²⁸⁾ 첫 번째 시기에 일본정부는 「폐쇄기관령」을 두 차례 개정하였는데, 이 중 1953년 8월 1일 개정(법률133호)은 은행의 청산 방향을 결정지었다.²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기관 중 ‘재외활동기관’에 대한 예외조항(19조 1항), 즉 잔여재산 처분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재외활동기관’과 다른 기관의 구분을 없앴다. 둘째,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유보 조항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재외채무의 총액을 확실히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유보하도록 하였으나 “재외채무의 총액이... 재외자산의 총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유보하는 것으로 고쳤다(19조 1항).³⁰⁾ 셋째, 주식회사인 폐쇄기관은 1/10 이상의 주식을 소

25) 위의 책, 151-152쪽.

26) 첫째 이유는 閉鎖機關整理委員會의 기술과도 상반된다. “개업 당초 내지(일본)에는 지점이 없었다. 그 후 내선간의 무역관계가 점차 밀접하게 됨에 따라 내선무역의 중심지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여 1910년 9월 비로소 대판에 지점을 설치하였다”(閉鎖機關整理委員會, 앞의 책, 165쪽).

27) 小田久藏, 앞의 글, 23쪽.

28) 이하 조선은행 일본지점 청산과정의 기본 사실은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89-815쪽에 의거한다.

29) 나머지 한 차례는 1952.7.16 개정(법률234호)이다. 강화조약을 앞두고 1953.3.31 포츠담선언에 기반 했던 대장성관계 제 법령을 수정할 때(ポツダム宣言の受諾に伴い發する命令に關する件に基づく大藏省關係諸命令の措置に關する法律, 법률43호)도 「폐쇄기관령」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일본국 중의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http://www.shugiin.go.jp>). 이하 법률 개정 내용도 이 사이트에 따른다.

30) 호시노는 1952년 4월 국회에서 기존의 조항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이 있으므로 어서 오십시오, 청구가 있으면 지불해드리겠습니다” 文言을

유한 주주가 규정된 유보 재산을 제외한 일본 내 재산으로 新會社 설립을 청산인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상법과 달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게 하였다(19조 3항~19항). 넷째, 종래 ‘재외채무’가 있으면 폐쇄기관 지정이 해제될 수 없었으나 이제 위와 같이 재산을 유보한다면 해제될 수 있게 하였다(20조 2항). 이에 따라 해제 대상을 기존의 “본방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폐쇄기관”에서 “외국법인이 아닌 폐쇄기관”으로 고쳤다(20조 4항). 또한 지정 해제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에 정해진 결의(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기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20조 8항).

전체적으로 ‘재외활동기관’, 점령 초기로 말하자면 경제침략기관과 다른 폐쇄기관의 구분을 없애고, 나아가 폐쇄기관과 일반기관의 구분을 없애 폐쇄기관의 ‘戰犯’이라는 족쇄를 풀었다.³¹⁾ 추방된 자가 해제되어 돌아오고 폐쇄된 회사가 부활할 수 있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재외채무’를 갚을 재산을 남겨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재외부채’가 있다면 먼저 ‘재외자산’을 공제한 뒤 남은 부분을 유보하면 된다. 일견 문제없어 보이지만, ‘재외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지하다시피 당시 한일회담은 한국 측의 청구권과 일본 측의 역청구권이 맞서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역청구권의 쟁점은 재외채무와 재외자산을 상쇄시키고 남은 부분을 결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폐쇄기관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제 ‘재외자산’의 규모에 따라 유보의 폭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선 유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법률개정 요지설명에서 ‘備考’로서 “조선은행과 대

법률에 쓰는 것은 외교상 매우 손해”다, “이런 위험한 문언을 법률상에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일고를 요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星野喜代治, 앞의 책, 159-160쪽).
31) 강화조약 이전까지만 해도 폐쇄기관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경제전범’으로 간주했었다(小田久藏, 앞의 글, 22쪽).

만은행은 대외관계의 귀추를 지켜본 뒤 처리할 것이며, 본법안의 시행에 의해 당장 폐쇄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신회사를 설립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달았다.³²⁾ 다만 大藏省管財局閉鎖機關課의 한 직원은 법안을 풀이하면서 “일본 외에 본점을 가진 주식회사는 재외채무가 있어 그 귀추가 판명되지 않는 한 회사의 기초는 불안정하므로 부활·계속은 사실상 무리이고 신회사 설립이 적당하다”고 했다.³³⁾ 이 무렵 실무선에선 서울에 본점을 둔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경우 신회사 설립이 타진되었던 것 같다. 이 법률 개정 때 국회의 ‘附帶決議’로서 폐쇄기관의 구관계자가 청산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마침내 1953년 11월 호시노가 청산인이 되었다.

호시노가 청산인이 되고서도 제2회사 설립은 3년 반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일본정부는 관련법을 다 정비해 놓고도 왜 망설였을까. 대외관계 때문일까. 법률 개정에 의해 ‘전범’이라는 족쇄를 풀고 보니 일반 은행이나 회사처럼 처리할 수 없는 조선은행의 특수성이 고민거리였다. 1954년 3월 국회의 ‘재외자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에 남은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대장성관재국폐쇄기관과장은 두 은행이 “발권은행이라는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남은 자산 전액을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제2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제2회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³⁴⁾

검토는 시간이 걸렸다. 1954년 5월 15일 「폐쇄기관령」 개정(법률105호)은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귀환한 일본거주 개인·법인·회사 등이

32)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92쪽.

33) 阪上行雄, 1953.1, 閉鎖機關の清算を促進, 『時の法令』 119호, 17쪽.

34) 『同和』 76호, 1954.4.1, 在外資産の諸問題. 위원회의 명칭은 ‘衆議院海外同胞引揚及遺家族援護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이다.

해외 점포에서 예금하거나 송금한 돈을 잔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불하게 한 조치였다. 식민지·점령지에서 귀환하여 ‘재외자산보상운동’을 전개하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원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³⁵⁾

고심의 결과는 1956년 2월 21일 공포된 「폐쇄기관령」 일부 개정(법률 109호)으로 나왔다. 부칙에 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은 위의 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유보를 한 뒤 남은 재산에 조선은행법(제27조)·대만은행법(제20조)이 규정하는 비율로 납부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잔여재산 처리, 주식회사 설립, 폐쇄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장성 측의 설명은 이렇다. 두 은행은 특별법에 기초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로부터 통화발행 특권을 부여 받아 각각 조선, 대만에서 발권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국내재산의 주요 생성원인은 전쟁말기의 국고송금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도 발권과 결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두 은행의 잔존재산을 모두 주주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중에는 국민 전체에 귀속해야 될 것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두 은행은 보통은행업무도 겸영하고 있어 잔여재산 중 발권에 기초한 이익 부분을 산정하기 곤란하니, 두 은행법에 규정된 납부금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조선은행의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67억 엔으로 납부금 28억 엔, 기타 세금을 공제한 뒤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17억 엔으로 예상된다.³⁶⁾

청산인으로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본래 발행권의 특권을 부

35) 相川 清, 1954.5.1, 「十五閉鎖機關に支拂の途」, 『時の法令』 133호; 『同和』 77호, 1954.5.1, 「引揚者在外資産解決の第一歩, 三法案國會で審議すむ」; 閉鎖機關朝鮮銀行特殊清算人星野喜代治, 1954.6.1, 「債權申立公告」, 『同和』 78호. 귀환자의 ‘재외자산보상운동’에 대해서는 주 41)의 정병욱 논문, 85-92쪽 참조.
36) 阪上行雄(大藏省管財局特殊清算課), 1956.6.13, 「在外會社等の特殊清算を促進」, 『時の法令』 209호, 23-24쪽. 「조선은행법 의 납부금 규정은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830-831쪽 참조.

여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일정 이익을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납부금제도를 일본지점 청산에서 발생한 잉여금(잔여재산)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호시노는 조선은행 有志 株主의 명의로 「폐쇄기관조선은행의 잔여재산과 납부금 문제」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관계방면에 배포했다.³⁷⁾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형태로 다음 네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일본은행과 달리 조선은행의 발권이익은 크지 않았다. 둘째, 잔여재산은 발권이익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셋째, 조선은행법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상법에 따르라는 것이다. 넷째, 잔여재산은 주주 즉 개인의 재산으로 납부금 부과는 재산권 침해다. 결론으로 강화조약 발효 이후 역대 내각은 항상 “점령정책의 지나침”을 시정한다고 하면서, 점령정책의 유물인 「폐쇄기관령」으로 엄청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은행의 주주와 직원을 “전범급 이상”으로 냉대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제2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풀어야 할 첫 단추인 유보재산(‘대외부채-대외자산’, 19조 1항) 문제는 왜 언급되지 않는 걸까. 조선은행 일본지점은 대외부채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잔여 재산 67억 엔은 유보재산을 제외한 수치인가. 한일회담 중이라 산정을 보류하거나 공표하지 않은 것일까. 호시노는 위의 소책자에서 잔여재산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잔여재산을 70억 엔 이상으로 예상하는데,³⁸⁾ 청산 잉여금(부동산 처분, 공채 이자 및 운용 등)이 20억여 엔이고, 기타로는 폐쇄 당시 本支店勘定の 56억244.6만 엔 채무가 소멸되면서 생긴 이익이 있다. 이 본점에 대한 채무는 「폐쇄기관령」 19조에서 말하는 재외부채 초과액 산출의 중요 자료다. 그런데 1954년 폐쇄기관령 개정에 의해 ‘外地預送

37) 星野喜代治, 앞의 책, 190-204쪽에 수록되어 있다.

38) 호시노와 대장성의 잔여재산 추산이 다른 것은 보유 국채를 발행가격으로 평가하느냐(호시노) 시중가격으로 평가하느냐(대장성)의 차이인 것 같다. 위의 책, 206쪽.

金'을 일정 환산율에 따라 국내 재산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제 지불액 6억5500만엔을 帳簿에 118억 7800만엔으로 기록하여 本支店勘定은 도리어 채권 초과로 변했다. 이 환산(1: 18)은 패전 당시 통화가치에 대한 정부의 검토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지점) 입장에서 보면 통화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이라고 했다.³⁹⁾ 일본정부 측의 자료를 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소책자의 설명대로라면 유보재산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이유, 유보 없이 잔여재산을 모두 청산 잉여금으로 간주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장부상 '재외자산'을 초과한 '재외채무'는 없으며 따라서 재산을 유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호시노는 정부 안을 수용하면 신회사 설립을 원조하겠다는 대장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⁴⁰⁾ 대장성의 계산대로 67억 엔의 잔여재산 중 납부금, 청산소득 및 영업세, 지방부가세 명목으로 50억 엔이 징수되고 17억 엔이 신회사 설립자금으로 남았다. 이제 귀환자단체인 中央日韓協會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잔여재산을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납부금 징수를 폭거로 보는 것은 청산인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산인 등 관계자들이 독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며 잔여재산이 귀환자 복지를 위해 쓰이길 바랐다.⁴¹⁾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은 주주와 구 직원은 혜택이 많은 반면 자신들의 희생이 크다며,

39) 위의 책, 199-200쪽. 조선은행 일본지점이 자기자산으로 '外地預送金'을 지불하면 일본지점은 '외지'점포(주로 본점 등 한국 내 점포)에 대해 채권을 갖게 된다.

40) 위의 책, 205-206쪽.

41) 中央日韓協會會長 田中武雄, 1955.7.1, 「危機に類した舊朝鮮銀行の財産を護れ, 朝鮮引揚者全體の福祉事業のために」 『同和』 91호 ; 1955.8.1, 「朝鮮銀行殘餘財産問題, その後の情勢」 『同和』 92호 ; 『同和』 98호, 1956.2.1, 「舊朝鮮銀行の殘餘財産の處理に關し, 田中會長から政府に要請」 ; 原田, 1956.3.1, 「今次國會と引揚者關係問題」 『同和』 99호. 중앙일한협회에 대해서는 정병욱, 2005.6,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 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 1950, 60년대 同和協會 · 中央日韓協會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 참조.

2/3만 지급되었던 예금의 전액 지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⁴²⁾ 제2회사로 日本不動産銀行이 추진되자 금융계와 언론에서 비판이 잇달았지만,⁴³⁾ 마침내 1957년 4월 개업하였고 사장은 호시노였다.⁴⁴⁾

당시 한국정부는 주일공사를 통해 한일회담에서 청구권으로 반환을 요구한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재산 처리에 대해 항의 했다.⁴⁵⁾ 일본국회에서 의원들은 국내재산을 처분한 뒤 한국에 지불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우려는 없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외무성아시아국장은 일본의 법규에 따라서 재산을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걱정 없다, 한국인 주주의 권리는 보증한다, 한국과 교섭한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폐쇄기관 재산에 관한 조치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대장대신도 법률에 기초해 처리하므로 지장 없다, 대장성관재국특수 청산과장도 일본에 있는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의 관례로 당연하다고 답변했다.⁴⁶⁾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본정부가 납부금 징수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호시노에게 건넨 얘기다. 당시 대장성관재국장은 그에게 신회사 설립

42) 『同和』 110호, 1957.2.1, 舊鮮銀預貯金者の各位に . “구鮮銀은 점점 청산도 일단락 되고 가까이 부동산은행으로서 재발족...이 청산에 대해서 예저금은 3분의 1이 잘리고 화폐가치가 격락한 금일 2/3밖에 지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잔여재산은 수십억이나 달했기 때문에 주주는 20배의 할당이 있고, 구 직원에겐 정규의 퇴직금 외에 막대한 이직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는 완전히 고객인 예저금자에게 많은 희생을 떠맡기고 주주나 직원이 정부와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작년 말 이래 동경의 예저금자 백수십 명이 예저금의 전액지불요청을 교섭하고 있다. 전국의 예저금자에 연락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자는...급히 연락 주십시오.”

43) 『同和』 104호, 1956.8.1, 朝鮮銀行殘餘財産の行方 . “근자에 무엇보다도 不明朗한 이야기다...은행통에서는...旧鮮銀의 무리를 먹이기 위해 돈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는 가라고 반대...금융정세나 중소기업금융의 실정을 봐서 새로 장기신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는 의문...”(원문은 『朝日新聞』 56. 7.22일자) 등등.

44) 설립과정은 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808-814쪽 참조.

45) 『同和』 98호, 1956.2.1, 「旧朝鮮銀行財産について韓國政府の抗議」.

46) 『同和』 101호, 1956.5.1, 朝鮮銀行の在日財産處理について-國會における論議」.

으로 “두 은행(-조선은행과 대만은행-인용자)에 대한 외부의 claim, 引揚者(귀환자) 문제 등 모든 불평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게 되므로 조선은행 전체로서는 도리어 好結果라고 확신한다”고 했단다.⁴⁷⁾ 조선은행과 같은 처지였던 대만은행 측도 이 문제를 “이론상 시비는 별도로 하고, 장래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 은행의 발행권 채무문제는 정부가 인수하여 이를 처리하고 두 은행은 이 문제에서 면책됨을 명확히 했던 것”이라고 보았다.⁴⁸⁾ ‘claim’은 청구권으로 번역된다.

혹시 일본정부가 지불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다. 전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가 그 주인공인데, 호시노가 1954년 11월 大藏省官房調査課 金融財政事情研究會에서 講述하는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다. 아직 납부금 문제가 나오기 전이지만 일본지점이 국채를 인수하게 된 과정과 본지점감정의 실체도 밝히고 있어,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겠다.

星野 : 종전 당시 조선은행이 지니고 있었던 국채의 잔액은 57억 정도... 전쟁 중 예금 기타 관계로 여유금이 생기면 그 당시 일본은행은 여유금이 있다면 국채를 사라고 종용...우리 쪽도 국채에 따르기 위해 국채를 꼭 사야 했으므로...그것이 등록국채로 쌓여서 종전당시 57억...그 국채는 대체로 조선은행권발행의 보증물 일부로 충당...그 중 8억 정도는 동경지점의 감정에, 나머지는 전부 본점의 감정, 즉 본점의 장부에 기재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이 된 직후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는지 모른다고 느껴 役員會를 개최해서 8월 며칠인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종전 후 바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경성에서 동경지점의 감정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동경지점의 감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본은행과 관계가 반드시 원활하지 않

47) 星野喜代治, 앞의 책, 207-208쪽.

48) 臺灣銀行史編纂室, 앞의 책, 1274쪽.

습니다. 동경 감정에 있었던 8억 이외 49억...중전 후 이쪽으로 감정을 바꿨던 부분은 일본은행의 등록국채 原簿에 다만 조선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은행이라는 이름만으로 경성이라든가 뭔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본은행 쪽은...다만 조선은행이라 하면 본점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등록국채는 당신 쪽 조선은행은 동경지점에 옮겨다지만, 우리 쪽 원부에는 조선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조선은행으로 되어 있는 이상 본점은 경성에 있으므로 이 감정은 경성의 감정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쪽에서 그것(국채)을 되사라하고 말해도 되사를 것을 주저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49)

이 때 미즈타(水田直昌)가 이관한 날짜를 확인하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본은행,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일본정부로서는 鮮銀(조선은행)의 국채를 한국에 지불할 하나의 펀드로서 생각...그러한 생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한다. 49억 엔을 한일회담 시 적용한 1달러 : 15엔 비율로 환산해보면 3억여 달러다.

일본에서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청산과 제2회사설립 문제는 일본정부와 식민지 귀환자가 戰前의 역사를 긍정하면서 다시 국가와 국민으로서 재회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재외재산보상운동’ 문제와 유사하다.50) 다른 점은 ‘재외보상운동’은 한일회담의 추이와 연동되어 그 해결이 지연된 반면, 폐쇄기관 문제는 일찍 정부와 관련자의 수수가 완료되고 정부가 대외적 부담을 떠안는 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물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계급정책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경제부흥’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의 해결방식 - 빠른 폐쇄기관의 활용, 부담이 되

49) 星野喜代治, 1954. 11. 4(講述日), (外地6) 終戦前後の朝鮮通貨金融事情とその對策(その三), 大藏省官房調査課 金融財政事情研究會, 32-36쪽. 당시 대만은행도 타 이에 본점계정의 국채를 일본지점 계정으로 옮겼다(多田井喜生, 2002, 『朝鮮銀行 - ある円通貨圏の興亡』, PHP研究所, 238-239).

50) 정병욱, 2005.6, 앞의 논문 참조.

는 ‘재외재산’보상의 지연 - 은 모두 유효했다.

또한 역청구권의 논리가 일본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드러나 동요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재외재산보상운동’과 조선은행 일본지점 문제는 유사하다. 일본정부는 법적으로 국가의 ‘재외재산’ 보상 의무를 부정하고, 다만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련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했다.⁵¹⁾ 조선은행 일본지점 문제에서도 일본정부는 관계자의 ‘사유재산’론, ‘일반회사’론을 부정하고 조선은행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납부금을 부과했다. 다만 특수성 주장은 절묘한 지점에서 멈춘다. 특수성을 과해치면 국고송금, 국채, 식민지화폐 발행 등이 나오는데, 조선은행은 ‘國策’을 따르는 특수금융기관임이 분명해진다. 식민지에서, 戰時에 ‘國策’이란 뭘까?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⁵²⁾

Ⅲ. 한국정부의 청구와 ‘한국법인’ 주장

1. 조선은행 · 조선은행청산위원회의 조사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일본에 요구할 배상액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정부 산하에 ‘대일배상요구조건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활동은 1949년 경 외무부정무국이 펴낸 『對日賠償

51) 정병욱, 2005.6, 앞의 논문, 87-88쪽.

52) 국채를 예로 들면, 일본이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주된 통로가 국채 발행이었으며, 금융기관은 할당된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했다(大藏省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6卷 - 國債』, 東洋經濟新報社, 1954, 292, 389쪽; 朝鮮銀行史硏究會編, 앞의 책, 682-683쪽).

要求調書』로 수립되었다.⁵³⁾ 『대일배상요구조서』에 나오는 많은 금융관련 수치들은 금융관계자들이 참여했음을 짐작케 한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조선식산은행원 金南榕에 따르면 1947년 9월 재무부 산하에 각 은행관계자가 참여하는 對日清算委員會가 구성되었고, 각 은행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각기 이론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948년 초에는 아메리카인들로 조직된 對日賠償對策委員會가 설치되어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고 했다.⁵⁴⁾

김남용은 당시 대일배상문제가 전승국 대 패전국의 강화문제와 다른 “세계사상 유례가 없고 국제법상 정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解放地區라는 특이한 입장” 때문에 견해가 구구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군정 법령2호(「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 1945.9.25)와 33호(「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 1945.12.6)⁵⁵⁾의 ‘조선 내 소재’와 ‘일본인’에 관한 해석문제를 조선식산은행에 대입하여 설명했다. 조선은행으로 바꿔 읽어도 되며 문제의 소재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當行은 조선 소재 일본 재산으로서 군정청에 귀속되느냐 또 일본 소재 당행 주식, 당행 사채는 조선 외 일본재산으로서 군정청에 귀속되지 않느냐의 문제 등이다. 만약 이러한 법령해석이 정당하다면 조선 내 대다수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대일재산권은 배상청구대상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며 일본 내에 다수 산재하여 있는 조선관계 유가증권 등은 군정청에 귀속되지 않고 일본인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의 연합국 측의 태도와 견해는 조선의 對日賠償要求參加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軍政法令 解釋에 있어

53) 오오타 오사무, 앞의 책, 54-79쪽 ; 박진희, 앞의 책, 47-59쪽.

54) 金南榕, 1948.2, 「對日賠償問題와 當行」, 『無窮』 3-1, 20쪽.

55) 법령의 내용과 해설은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25쪽, 252-255쪽 참조.

서도 조선 내 登記法人은 자본구성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법인으로 인정함과 또 조선 내에 근거가 있는 모든 일본인의 재산권은 전부 군정청에 귀속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으로 조선 내 은행은 대일배상문제의 一翼을 담당하여 당당히 대일채권 등의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⁵⁶⁾

비록 초기이지만 이후 한일 간 청구권 협상, 특히 조선은행 일본지점 재산문제에서 계속 논란되는 두 가지 문제가 명료하게 인식되었다. 하나는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등 조선 내 은행이 일본법인이나 한국법인이라는 문제다. 만약 전자라면 조선 내 은행은 귀속 대상이지 청구나 배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김남용은 연합국측이 최근 후자를 인정, 즉 “조선 내 등기법인은 자본구성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법령33호의 귀속재산 범위에 대한 아메리카군정의 해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군정은 애초에서 일본인 회사주식이 일부 분만 포함되었다라도 그 법인 자체를 군정에 귀속시켰으나, 이후 방침을 변경하여 법인체는 법인체대로 존속시키고 그 일본인 주식 부분만 귀속시켰다. 아메리카군정은 귀속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⁵⁷⁾ 이런 변화는 조선인, 특히 자산가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에게서 국산자동차(주)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했던 金龍周는 회사의 적산주식 때문에 군정의 접수와 반환이 반복되자, 아메리카 국무성에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고 한다.

8.15해방 이전부터 한국 내에 등기되어 있고 소수라도 한국인 주주가 끼어 있는 한국 내의 본점을 둔 회사는 일본인이 가진 주식은 적산이나 회사는 한국법인이므로 그 회사를 적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⁵⁸⁾

56) 위의 글, 20-21쪽.

57) 김기원, 앞의 책, 23-24, 146-147쪽. 이런 아메리카군정의 변화는 아메리카 삼부조정위원회의 지령(SWNCC 176/23, 46.8.14)에 의해서도 추진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 근거가 있는 일본 내 재산은 귀속 대상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만약 아니라면 한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일본 소재 재산을 청구할 근거는 약해진다. 김남용은 연합국 측 혹은 아메리카군정이 “조선 내에 근거가 있는 모든 일본인의 재산권은 전부 군정청에 귀속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 아메리카군정의 우호적인 해석에 한국인 조사자가 고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아메리카의 해석이 달라지면? 주지하다시피 법령33호의 적용 지역 문제는 이후 한일 간에 논란되는 중요 사항이며, 양국 모두 아메리카의 해석에 매달린다.

조선은행과 조선은행청산위원회⁵⁹⁾ 측이 1947년 이후 1950년대 초까지 조사하였던 배상/청구액의 주요 수치는 **【표 2】**와 같다. 먼저 ‘1.총액’은 194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수치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가 수합되어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에 반영되었다. ‘2. 확정액’은 한국정부가 한일회담에서 제시할 청구권 항목에 맞춰 다시 조사 집계된 수치로 1952년경 작성된 것 같다. ‘1. 총액’과 비교해 보면 자산의 4개 항목만 축소된 액수로 ‘2 확정액’에 반영되었다. 이는 당시 근거가 확실한 것만 추렸던 탓도 있지만 『대일배상요구조서』와 ‘청구권 8항목’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 전자에서 ‘배상’의 성격을 띤 것은 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무배상’ 원칙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⁶⁰⁾ 또한 전자의 항목이 피해 물건별로 분류되었다면 후자는 주로 청구 주체별로 분류되었다. 배상이 패전국이 입힌 피해, 손실에 대한 지불이라면, 청구는 피해나 손실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로 청구주체의 자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일부와 미수금 항목이 일본지점재산으로 통합되었던 것도 조선은행 본점을 청구 주체로 상정했기 때

58) 한국일보사, 1981, 『財界回顧 2』, 50쪽.

59)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업무를 인수하였고, 조선은행의 청산을 위해 조선은행청산위원회가 조직되었다.

60) 오오타 오사무, 앞의 책, 121-122쪽.

문이다.

【표 2】 조선은행의 대일본재산청구권 내역

1. 총액(1947.9.30 현재)			2. 확정액(1952?)		
과목	액수 (円)	『調書』 (1949)	과목	액수(円)	청구권
(1) 자산					
일본계통화	1,540,783,700.17	확정채권	본점소유 일본은행권	959,773,609.00	5. 한국법인·자연인 소유 각종 유가증권 등
대일본환잔(미수금)	2,988,715,223.58	확정채권	제일본지점 재산	6,642,393,830.69	4. 한국본점법인의 제일재산 5. ~ 각종 유가증권 등
일본계유가증권	4,972,362,590.08	확정채권	본점소유 유가증권	170,196,880.08	5. ~ 각종 유가증권 등
만주, 중국 유가증권	4,000,000 S\$	확정채권			
대출금	3,950,843,110.74	확정채권			
해외점포, 동산	7,916,707.34	현물반환			
외자금이자미수 분	33,416,438.35	확정채권			
일본정부국고금	1,025,764,331.65	확정채권	국고금	58,889,841.85	2. 총독부의 대일채권
대일본인 가불금	206,256.97	확정채권	확정액	7,931,254,161.62	
일본인부정지출	44,902,321.79	해당 없음	3. 일본지점폐쇄기관청산보고(1950.9.30현재)		
대일본수납지금	49,633,198.61그램	현물반환	자산	금액 (円)	
대일본수납지은	69,577,771.20그램	현물반환	확정자산 A	5,793,835,380.94	
부산안전은행계정	1,053,290.44	확정채권	(국채)	(5,637,812,627.07)	
부산제국은행계정	8,662,884.01	확정채권	미확정자산	268,070,162.36	
<자산합계 A>	14,774,626,855.12 円, 상해\$ 4,000,000 지금 249 톤, 지은 69 톤		현금 및 예금B	866,690,540.28	
			소계	6,928,596,083.58	
(2) 부채 합 B	49,891,052.90 円		부채	금액	
			청산대금중 대일채무 C	18,132,090.53	
(3) 청구권총액(A-B)	14,724,735,802.22 円, 상해\$ 4,000,000 지금 249 톤, 지은 69 톤		본점계정 및 주주에 대한 채권	6,910,463,993.05	
			(본지점계정)	(6,174,401,478.50)	
			소계	6,928,596,083.58	
			청구액(A+B-C)	6,642,393,830.69	

자료 : 朝鮮銀行清算事務局, 『對日財産請求權内譯』, 1952(?), 3-9, 13쪽, 17쪽.

* '1. 총액'은 朝鮮銀行, 『朝鮮銀行의 對日債權一覽表(南朝鮮)(1947년9월30일 調査)』와 수치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 집계된 것이다. '2'는 '3'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3'에는 "화폐단위 = 1952年 円"이란 기록이 있어,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1952년 이후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8항목을 제시하였던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단계에 한국 측은 이미 조선은행 본점은 일본지점 재산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연합군총사령부가 일본지점을 폐쇄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였을 것이다. 1949년 12월 河祥鏞 大韓金融組合聯合會 부회장 등이 동경을 방문해 한국관련 폐쇄기관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우리가 조사한 액면과 거의 같”음을 확인했다. 하상용은 이 폐쇄기관의 채권청산 여부를 금융계 재건의 관건으로 보고 연합군총사령부 측에 빠른 회수를 요청했으나 대일강화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⁶¹⁾ 앞서 보았듯이 1950년 12월 「폐쇄기관령」은 ‘재외활동기관’의 잔여재산 처리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1951년 9월 경에는 연합군총사령부가 폐쇄기관의 외국인채권 청산을 지시하였다며 한국은행에서 폐쇄기관의 한국인 채권을 신고 받았다.⁶²⁾

이무렵 한국은행 측에서 일본지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기관정리위원회를 방문했던 것 같고,⁶³⁾ 그 결과물이 【표 2】의 ‘3. 일본지점폐쇄기관청산보고’이다. 1950년 9월말 현재 폐쇄기관정리위원회의 조선은행 일본지점 청산실적표에 의거해 계산·작성된 것으로 ‘2. 확정액’의 ‘재일본지점 재산’이 산출된 방식을 보여준다. 폐쇄기관 일본지점의 자산 중 미확정 자산을 제외한 ‘확정자산액+현금·예금’에서 일본 내에 갚아야

61) 『한성일보』 1950년 1월 05일자, 河祥鏞 大韓金融組合聯合會 부회장, 일본정부에 대한 국내 은행 채권 상환교섭의 시급성을 강조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 『자료대한민국사』 16권에 수록).

62) 『서울신문』 1951년 9월 02일자, 해방 전 발행한 채권은 일본정부서 변제 ; 『대구매일신문』 1951년 09월 7일자, 「한국은행, 일제시대 채권 신고 요망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자료대한민국사』 22권에 수록).

63) 당시 폐쇄기관정리위원회 상무위원이었던 石橋良吉는 군정을 통해 한국은행에선가 자료를 조사하러 온 적이 있다고 한다(石橋良吉·岩動道行, 1953. 11.10(講述日), 『(管理1)戰後における閉鎖機關の處理』, 大藏省官房調査課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8쪽).

할 부채를 뺀 부분을 청구액으로 계산했다. 확정자산 중에는 본점 것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예를 들자면 확정자산의 97%는 56억여 엔인 국채인데, 그 국채의 79%인 44억여 엔이 본점분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 중 본점 것에 해당하는 것이 부채의 본지점계정으로 잡혀있다. 부채의 총액 69억여 엔 중 본지점계정은 약 62억 엔으로 89%나 차지했다. 일본지점의 본점과 거래량, 그 의존도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 있다.

앞의 호시노의 증언에서 보았듯이 일본지점 재산에는 해방 이후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관한 일본계 유가증권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조선은행측도 초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액수를 청구했다. 조선은행이란 이름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전 문서인 『朝鮮銀行의 對日債權一覽表(南朝鮮)(1947년9월30일조사)』를 보면 1945년 8월 25일 본점에서 동격지점으로 이관된 유가증권의 내역과 금액을 【표 3】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호시노가 일본지점으로 이관한 이 유가증권은 【표 2】이 ‘1. 총액’에는 ‘일본계 유가증권’으로, ‘2. 확정액’에는 ‘재일 본지점재산’ 항목에 포함되었다.

【표 3】 조선은행 동격지점으로 이관된 일본계 유가증권(단위 : 엔)

	액면가격	장부가격
일본국채	4,462,853,985	4,249,876,372.85
지방채	1,327,500	1,327,500.00
회사채	247009600	243,208,433.60
주식	18,805,850	17,968,780.65
외국채	59,005,200	53,410,070.20
합계	4,789,002,135	4,565,791,157.30

자료 : 朝鮮銀行, 『朝鮮銀行의 對日債權一覽表(南朝鮮)(1947년9월30일 調査)』

2. 뉴욕지점 재산 추심과 6차 한일회담의 논리 전환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8항목이 실제 토의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 5차 및 6차 회담 때였다. 한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일본 내 재산 청구(청구권 제4항목)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회담록을 살펴보면 5차 회담과 6차 회담 사이에 한국 측의 논리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5차회담 때까지 한국 측의 논리는 아메리카군정 법령33호에 의해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재산이 아메리카군정에 귀속되었고, 1948년 9월 11일 「한미 재정급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이하 ‘한미재산협정’으로 줄임)⁶⁴⁾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관되었으니 귀속된 재산의 일부로서 한국본점회사의 일본 내 재산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법령33호의 효력은 지역적으로 아메리카군이 점령한 남한에 한정되며, 시기적으로 법령 포고일인 1945년 12월 6일 현재 재산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법령의 8월 9일은 ‘日本性’을 결정하기 위한 날짜일 뿐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본점회사의 일본 내 재산은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게 된다.⁶⁵⁾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메리카의 태도다. 1957년 한일 간의 청구권문제에 대한 아메리카 국무성의 각서는 ‘속지주의’, 즉 일본 영토에 있는 재산은 일본 것, 한국 영토에 있는 것은 한국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았다. 이에 한국 측 관계자들은 내부회의에서 “우리 측 자체의 청구이론”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국본점회사의 일본재산 요구를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후순위에 배치했다.⁶⁶⁾

64) 협정 내용은 김기원, 앞의 책, 270쪽 참조.

65) 오오타 오사무, 앞의 책, 229-230쪽; 吉澤文壽, 2005, 『戦後日韓關係』, タレイン, 119-120쪽.

66) 외무부 정무국 편,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1960.10.25-61.5.15) 일반청구권 소위

그런데 6차 회담 때 한국 대표는 청구권 제4항목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들 회사가 한국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대표는 5차 회담 때는 법령33호에 의하여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바뀌었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한국 대표는 “군정법령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주식 귀속의 경위이고 청구 근거는 한국의 법인 재산이라는 점”을 여러 번 밝히며, 일본 측의 폐쇄기관 청산상황을 물었다. 일본 측은 ‘속지주의’의 입장에서 청구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청산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⁶⁷⁾

한국 측의 전환은 어떻게 준비된 것일까. 물론 앞서 보았듯이 법인의 국적 문제나 주주와 법인의 분리 인식은 아메리카군정 시기에 그 단초가 나왔다. 그런 인식이 이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6차 회담에 등장한 계기는 무엇일까?

6차 회담 시 한국 측의 주장은 그 내용으로 볼 때 1950년대 말 조선은행 뉴욕지점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논리와 동일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⁶⁸⁾ 조선은행이 1919년 11월 설치한 뉴욕지점은 1941년 12월 일본이 아메리카와 개전함에 따라 아메리카에 의해서 적산으로 폐쇄되었고 그 재산은 동결되었다. 전쟁이 끝날 당시 조선은행계정으로 7만7천불이 잔존하였는데, 이후 아메리카 법무성의 Office of Alien Property에 의해 관리되었다. 조선은행청산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재산을 발견하고 1957년 5월 재무부를 통해 외무부에 추심을 의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거는 법령33호와 「한미재산협정」이었다. 즉 법령33호에 귀속된 일

원회 회의록 1-13차』, 45-46, 77-78쪽. 62-63쪽.

67) 외무부 정무국 편, 『제6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 회의록, 1-11차(1961.10.27-62.3.6)』, 92-95쪽.

68) 이하 내용은 외무부 외교사료과,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 추심문제, 1957-59』 (분류번호 761.2 US 157-59, 등록번호 334)에 수록된 문서들을 간략히 재구성한 것이다.

본인 공유 및 사유재산이 이 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조선은행 뉴욕지점의 재산도 한국정부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년 7월경 주아메리카대사가 아메리카정부 측 담당관과 접촉하였으나, 법령33호는 군정관할구역 안의 일본인 재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외무부는 재무부,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1959년 5월경 “조속 추심”의 방안을 수립했고, 동년 8월경 주요국 대사관에 회람시켰다.⁶⁹⁾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논리가 대두되었다.⁷⁰⁾ 하나는 조선은행은 애초에 한국법인이라는 주장이다. 각국에서 법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통 주소지(사무중심지와 주요사무소 소재지)와 설립준거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를 따를 경우 당연히 한국법인이다. 후자를 따를 경우도 조선은행법의 특수성을 살펴야 된다. 우선 법의 시행지. 조선은행법은 일본 상법과 달리 일본 본토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지방에 시행 적용되기 위한 법이다.⁷¹⁾ 다음으로 법의 제정권자. 법을 일본국이 제정하였다고 일본 법인으로 보는 것은 한국이 한일‘합병’ 이후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권을 회복하였다는 역사적 특

69) 이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른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일한 자료는 1961년 7월 재무부가 외무부에 여전히 “계속 추심과 조속 회보”를 의뢰하는 문서다(재무부장관 → 외무부장관, 1961.7.31,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 추심에 관한 건(재이제5327호)」。외무부외교사료과,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 추심문제, 1961』(분류번호 761.2 US, 등록번호 1274)에 수록).

70) 이하 내용은 주로 법무부장관→외무부장관, 1957.12.27, 미국소재조선은행재산추심을 위한 법적견해 문의의 건(법무제2573호)」; 재무부장관→외무부장관, 1959.2.23,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 추심에 관한 건 회답(재이?호)」; 외무정무국, 1959.5.7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추심에 관한 건 을 토대로 정리했다. 모두 주 68의 자료에 수록되었다.

71) 주된 근거로 든 조선은행법 23조는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조선총독이 관할지역 내에서 무제한 운용되는 것으로 한다”이다(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4쪽). 실제 조선은행권은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吳斗煥, 1991, 『韓國近代貨幣史』, 韓國研究院, 316쪽).

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한국인이 ‘합병’과 동시에 국적을 상실했다가 전쟁 종결 이후 자동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것과 같이 법인으로서는 조선은행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선은행이 ‘합병’ 이전에 1909년 대한제국 법령 22호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은행의 후신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⁷²⁾

다른 하나는 법인체와 주주의 분리 인식이다. 법인체인 회사는 그 자체가 권리주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인적요소와는 관계없다. 주주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법인자체의 동일성에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자기의 재산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의 재산이란 자기 주식에 상당한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령33호와 「한미재산협정」은 한국법인인 조선은행의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일본인이 소유한 조선은행 주식에 한정된 것이다.

아메리카측이 법령33호를 들어 조선은행 뉴욕지점의 재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조선은행을 일본법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나온다. 조선은행은 한국법인으로서 법령33호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권리주체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장소 불문하고 조선은행의 것이다. 게다가 법령33호와 「한미재산협정」에 의해 일본인의 주식이 한국정부에 귀속되어 한국정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조선은행 뉴욕지점 재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의 재산

72) 양자의 계승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로 「조선은행법 43조(구한국 율회3년 법률 제 22호에 의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칭하고 한국은행설립의 날에 본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은행이 했던 행위는 조선은행이 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이 했던 등기는 조선은행이 했던 등기로서 간주하고 등기부에 은행의 명칭은 당연 변경된 것으로 한다), 44조(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는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로서 취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45조(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그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든다(朝鮮銀行史研究會 編, 앞의 책, 75-76쪽).

즉 적국인 재산으로서 아메리카정부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된 현재 그 재산은 적산의 지위에서 자연히 이탈된 것이므로 한국법인인 조선은행에 반환되어야 한다.

당시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은 위와 같은 대안에 대해 당시 한일협상의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에 “악선례”가 될까 우려했다. 종래 한국정부의 청구권 주장은 일관되게 법령33호와 「한미재산협정」에 의거했는데 대안은 그와 다른 해석이다,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 뉴욕지점 재산에 대해서도 종래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⁷³⁾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뉴욕지점의 재산 추심과정에서 나온 논리는 6차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 대표가 그대로 주장했다.

<한일회담에서의 한국 측 청구 제4항에 관한 한국 측의 주장>

제1. 한일회담에서의 한국청구 제4항은 한국에 본점, 본사, 기타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제일재산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국법인이라고 함은 동법인의 구성원(주주 등)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국적문제는 그 구성원의 그것과는 전연 별개의 관념으로서 일본 본토와 한국(구조선)은 종전 전에 있어서도 법역을 달리하였는바, 전기 법인은 모두 한국(구조선)에만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 주 사무소가 한국(구조선)에 설치되어 있던 법인입니다. 그 뿐 아니라 특히 조선은행은 구한국의 중앙은행이었던 구 한국은행을 계승한 법인으로서 이상 제 법인이 한국법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미군령제33호의 적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상 법인의 제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同 군령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동시에 동 군령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동 군령의 적용대상은 그 법인 자체가 아니고 동 법인의 일본인 소유주식에 불과하므로 동법

73) 주일대표부 진필식 정무과장→ 외무부정무국장 김영주, 1959.7.2,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추심에 관한 건'에 대한 답신).

인의 재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종전 전후를 통하여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⁷⁴⁾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법인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그 구성원(주주 등)의 사유재산이다. 일본 측은 국제법의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을 따르며, 설사 법인의 국적이 한국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일지점의 재산을 한국에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남한에서 아메리카군정청의 법령에 의한 일본재산의 처분과 일본에서 연합군총사령부 지령에 의한 재일재산의 처분은 상호 영역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⁷⁵⁾ 일본정부가 국내에서는 조선은행 일본지점 청산인이나 귀환자단체의 ‘사유재산’론을 부정하면서도 한일회담에서는 ‘사유재산’론을 주장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재반론에 나선 한국 측은 아메리카군정 법령이나 연합군총사령부 지령의 법 취지가 일본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연합군총사령부가 특정 기관을 폐쇄 또는 청산한 것은 동 기관이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이유에서 취한 조치이지 그 재산의 일본 귀속을 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⁷⁶⁾

6차 회담 때 한국 측의 논리 전환에 대해 기존 연구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오타는 5차 회담에서 법령33호를 둘러싼 논쟁에서 일본 측이 일단 ‘승리’했다고 보고 제6차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그 법령에 대한 언급조차 피하려 했다고 한다.⁷⁷⁾ 피하려 했다가보다는 근거가 바뀌었다. 유일하게 주의를 기울인 요시자와(吉澤文壽)는 식민지기 조선반도

74) 외무부 정무국 편, 『제6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 회의록, 1-11차(1961.10.27-62.3.6)』, 164쪽.

75) 吉澤文壽, 앞의 책, 139쪽(주 74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재인용한다).

76) 위의 책, 140쪽; 외무부 정무국 편, 『제6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 회의록, 1-11차(1961.10.27-62.3.6)』, 164쪽.

77) 오오타 오사무, 앞의 책, 231-232쪽.

에 본사를 둔 법인을 해방 때로부터 소급하여 韓國籍 법인으로 보고 그 재일지점재산을 한국의 재산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논리는 ‘역지’라고 하며 이 점은 아메리카도 인정했다고 한다.⁷⁸⁾ 1909년 대한제국법령으로부터도 설명하고 있다.

‘승리’나 ‘역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국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의 구성과 상관없이 법인 그 자체가 권리주체라는 점은 상식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선은행이 일본법인이나 한국법인이나는 점이다. 한국법인이란 인식이 해방직후 아메리카군정 시기에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과 한국인이 해방되어 주체로 서는 순간이며, 아메리카군정 역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역을 점령한 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정정도 점령 지역의 사정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야 되는 순간이다.⁷⁹⁾ 즉 식민지배와 다른 논리와 근거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오오타도 저서 곳곳에서 지적했듯이 아메리카든 일본이든 당시 근대 국내법과 국제법은 식민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법이다. 탈식민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시도를 다시 기존 법의 틀로 재단하는 것은 은연중에 지배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 정부의 ‘한국법인’론이 일본정부의 ‘사유재산’론에 비해 현실적으로 힘이 없었는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조선은행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준다. 왜 일본은 조선에 일본은행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굳이 일본법에 의해 일본인이 지배하는 별도의 중앙은행을 만들어 일본과의 유통이 차단된 조선은행권을 발행했을까?

78) 吉澤文壽, 앞의 책, 140쪽.

79) 이런 차원에서 아메리카군정의 법률제정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고지훈, 2000, 주한미군정의 점령행정과 법률심의회국의 활동, 『한국사론』 44가 있다.

3. 문제의 종착점과 식민지적 기원

한일회담은 정치적 타결로 끝났다. 한국에서 조선은행 일본지점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1970년대 초 조선은행청산위원회는 『대일민간청구권현황』을 정리하였다. 제시된 표의 날짜가 ‘1972.2.29’이고 그 위에 ‘1974.9.30’이라 첨서된 것으로 봐서, 당시 1971년 9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과 1974년 12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비 문서인 듯하다. 전체 청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조선은행청산위원회의 민간청구권 신고대상 종류 및 금액(단위 : 원)

종류별	신고대상금액	신고금액 (민간주주지분 22.966%)
일본은행권	105,739,061.90	24,284,032.95
일본정부 국공채	177,828,070.08	40,839,994.57
일본권업은행채권	177,063.00	40,664.28
제일재산청산 잉여금	1,806,661,987.00	414,917,991.93
	2,090,406,181.98	480,082,683.75

자료 : 조선은행청산위원회, 『대일민간청구권현황』, 1972(?), 1쪽

* 원자료에는 약간의 수정된 수치가 첨서되어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 인쇄된 수치를 제시했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부분은 ‘제일재산청산 잉여금’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는 1957년 3월 청산이 완료되고 제2회사에 출자된 청산 잉여금에 대해 한국인 주주 지분을 요구한 것이다.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 2조에 따르면 신고대상의 하나로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을 규정하였다.⁸⁰⁾ 일본정부가 한일협상 때 이

항목에 대해 제시했던 해결책이다.

한편 조선은행청산위원회는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의 국채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며 아래와 같이 주석을 달았다. 등록국채인데도 현물을 내놓으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는 한일협상 때 일본정부의 증거 요구를 생각나게 한다.

일본인은 1945.8.15 해방 후 동년 9월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전인 8월 25일자로 조선은행 본점 소유 일본정부발행 국공채를 비롯하여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 4,789,002,135엔을 동경지점으로 이관하였는바 그 중에는 신고대상으로 인정되는 일본정부 국공채 4,462,853,985엔과 지방채 1,327,50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된 유가증권은 1945.8.15 현재에 있어서는 본점 소유자산이었음에 비추어 이를 신고하고자 당국에 문의하였던바 유가증권은 신고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현물인 유가증권이 아니며 재일지점 자산에 계상된 후 수입 처리된 청산잉여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고될 수 없다는 답변이유기에 제외하였습니다.⁸¹⁾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다루는 문제의 기원으로 식민지 중앙은행제도, 통화제도를 간단하게 지적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6차 한일회담 때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윤근의 의문은 정곡을 찌른다.

...일본 측의 견해와 같이 귀속도 되지 않고 한국법인의 소유도 아니라 고 하면 조선은행권의 담보는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된다...전쟁이 시작된 이후...금은 일본은행권 그리고 국채로 변하였는데...조리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은행권의 담보가 전부 일본의 소유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할 수 가 없다...(밑줄은 인용자)⁸²⁾

80) 조선은행청산위원회, 1972(?), 『대일민간청구권현황』, 12쪽.

81) 조선은행청산위원회, 1972(?), 『대일민간청구권현황』, 7-8쪽.

82) 외무부 정무국 편, 『제6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 회의록, 1-11차(1961.10.27-62.3.6)』,

김윤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식민지 현실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권은 사실상 불환화폐였다. 더욱이 정화 준비나 보증 준비에 필요한 물건은 금이건 일본은행권이건 국채건 모두 일본 내 보관을 유도하였고 찍어낸 종이돈만 조선과 중국 등에 유통시켰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돈을 자산의 유출 없이 조선은행권 발행을 통해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행권은 실제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못했지만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지역도 확대되고 액수도 폭증했다. 조선은행과 조선은행권은 조선과 만주, 중국으로 인플레이를 수출하고 역으로 일본으로 들어오는 인플레이는 막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남발된 은행권과 인플레이는 조선에, 발행에 필요했던 자산을 일본에 남게 되었다. ‘종이로 치른 전쟁’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⁸³⁾

맺음말

폐쇄된 조선은행 일본지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국채는 원래 경성(서울)본점의 자산으로 동경지점에서 보관했던 것인데, 패전 직후 당시 부은행장이었던 호시노(星野喜代治)가 장부상 지점 자산으로 이관시켰다. 일본정부는 제2회사설립 때 조선은행이 발권의 특권이

147-148쪽.

83) 오두환, 앞의 책, 296-337쪽 ; 정병욱, 2006, 「일제 강점기의 화폐」,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참조. ‘종이로 치른 전쟁’에 대해서는 多田井喜生, 1997, 『大陸に渡つた円の興亡(下)』, 東洋經濟新報社(辛永吉 역, 1998, 『돈의 전쟁(下)』, 知誼堂), 355~359쪽 참조.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납부금 등을 징수하였다. 이관된 국채나 징수된 납부금의 규모는 대략 ‘한일협정’으로 한국정부가 받게 되는 무상 3억 달러에 상당한다.

1952년 일본국회에서 호시노는 청산문제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조선은행이 ‘일본법인인 일반은행으로 평화로운 금융활동’을 했다고 역설했다. 각국의 정책은 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반론이었다. 우선 아메리카는 일본점령 초기 조선은행의 전쟁협력, 경제침략을 문제 삼아 폐쇄시켰다. 그러나 점령비용의 증가와 공산주의 확대에 대한 걱정 앞에 폐쇄기관에 대한 ‘징벌’은 이상에 불과했다. 점령정책은 곧 비군사화에서 경제부흥으로 전환되었고, 폐쇄기관의 빚장은 점차 풀려 그 자산은 일본경제의 자립화를 위해 활용되었다. 한국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조선은행 일본지점은 활용이 유보되었으나 전쟁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스스로 빚장을 풀었다. 한국까지 시야에 넣으면 아메리카의 재산 처리에 나타난 ‘속지주의’는 결과적으로 양 지역에 반공의 토대를 쌓는 데는 성공이었으나 양국에는 분쟁의 씨앗이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주식에 두 개의 소유권이 공존하는 기현상도 낳았다. 동일한 조선은행의 일본인 주식이 남한에서는 귀속되어 아메리카군정, 이어서 한국정부가 권리를 행사했고, 일본에서는 그 주주가 청산 배당을 받고 제2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였다. 당시는 반공을 위해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시대였다.⁸⁴⁾

일본정부는 조선은행이 일반은행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을 강조하여 막대한 납부금을 징수한 뒤 제2회사 설립을 허가했다. 청산인 호시노는 납부금을 내는 대신 대외적 부담 - 한국이 청구권을 주장하는 재산 - 을 정부에 떠넘기고 제2회사

84) 고지훈, 앞의 논문, 236, 266-267쪽.

설립을 지원 받았다. 강화조약 이후 일본지점의 청산과 제2회사 설립은 패전 이후 일본정부와 식민지 귀환자가 戰前의 역사를 긍정하면서 국가와 국민으로서 다시 재회하는 과정이었다. ‘재외재산보상운동’이 그 ‘국민 편’이라면 폐쇄기관 청산은 ‘자본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회의 바탕이 된 과거사 인식은 이웃나라와 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정부가 강조하는 조선은행의 특수성을 파헤치면 ‘國策’이 나온다.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에서 국내에서는 부정했던 호시노의 주장 - 조선은행은 주주의 사유재산 - 을 내세운다.

한일회담은 한국정부가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으면 일본정부는 과거사 인식의 차이로 치부하고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법이란 대부분 일본법이고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위한 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조선은행이 본점 소재지와 법 시행지 등의 측면에서 한국법인임을 주장했다. ‘한국법인’론은 아메리카군정 시기부터 나왔고, 1950년대 말 뉴욕지점의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져, 제6차 한일회담에 등장했다. 식민지와 그로부터 해방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담아내려는 ‘탈식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론에 비해 조선은행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준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정치적 타결로 ‘한일협정’을 맺은 뒤 국내에서 민간청구권을 신고 받을 때는 과거 일본정부의 논리를 답습했다. 마치 일본정부가 역청구권을 주장하다 ‘한일협정’ 뒤 국내에서 ‘재외재산’보상 의무를 부정했던 것과 유사하다.

본 논문은 세부 소재를 통해 한일관계와 양국 국내 정치(정부와 국민의 갈등과 통합)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서로 비교해보려 했으나 일본 측에 비해 한국 측의 국내 정치가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 일본에 비해 정부와 다른 조선은행 관계자의 목소리는 드물었다. 한일관계의 세부 소재를 통한 한국 국내정치 분석은 다음 과제로 미룬다.

Abstract

The process of liquidating the Japan Branch of the Bank of Chosun and Korean-Japanese relation

Jung, Byung-Wook

The process of liquidating the Japan Branch of the Bank of Chosun tells us three things.

First, America's liquidating policy toward the Bank of Chosun is the territorial principle ; What is in Japanese territory belongs to Japanese government and What is in Korean territory belongs to Korean government. This principle and the conversion of the Japanese occupation policy was the cause of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charged the liquidator of the Bank a huge tax payment for special bank. Instead of paying the tax, the liquidator cast his diplomatic burden o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uld establish the new compan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liquidator met again as a country and its peopl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aid the Bank of Chosun as general bank in Korea-Japan Negotiation Talks which was denied on the home.

Third, the Korean government argued that the Bank of Chosun was Korea's corporations in Korea-Japan Negotiation Talks. This claim reflected the historical particularity as liberation from the colonial and revealed the uniqueness of Chosun banks in colonial compared to Japan's claim.

Key Words : the Japan Branch of the Bank of Chosun, Closed
Institution, liquidation, Claim, Korea-Japan Negotiation
Talks